

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,

시·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
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
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지역경제협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

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 의안의 제출과 안건의 배부,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

실무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감사합니다.